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12 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권향엽·정일영·정동영

박지원 · 김기표 · 용혜인

서미화 · 남인순 · 허성무

이병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'프리젠티즘' 현상이 심각함.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쉰 사람 수의 2.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.81배를 압도하는 상황 임.

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'아프면 쉴 권리'를 보장하여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「근로기준법」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, 1969년 국제노동기구(ILO)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.7%로 하며, 상병수당의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30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9조의2(상병수당)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근로기준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상병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상병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상 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, 부상,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(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) 평균의 1천분의 667을 지급한다.
 - ⑥ 그 밖에 상병수당의 지급대상, 지급신청, 지급금액, 지급기간 및

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0조 중 "장제비, 상병수당"을 "장제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 절> 제49조의2(상병수당)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 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근로 기준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 자에게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상병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한다.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이내에 상병수당의 지급 여부
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0조(부가급여) 공단은 이 법에 제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·출산 진료비, <u>장제비, 상병수 당</u>,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
질병, 부상, 출산 등의 사유가
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
소득(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에
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
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
득을 말한다) 평균의 1천분의
<u>667을 지급한다.</u>
⑥ 그 밖에 상병수당의 지급대
상, 지급신청, 지급금액, 지급기
간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]50조(부가급여)
<u>장제비</u>